

<붙임 1>

상호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변경내용-변경전후의 상호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상 호	리딩에머슨자산운용 주식회사	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

* 외국어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기재

2. 변경사유 : 대주주 지분변경에 따른 상호변경

3. 변경일 (등기일) : 2019년 3월 28일 (2019년 3월 28일 등기)

■ 첨부서류

변경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- 대주주 지분변동에 따른 상호변경 및 신임 이사 보선 및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

2. 주요 변경내용

- 상호변경
- 공고방법 변경
- 이사의 임기 변경
- 집행임원 조항,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조항 삭제
- 위원회, 경영위원회 및 위원장 조항 변경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
1. 신규조문대비표

	변경 전	변경 후
제 1 장 총칙	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리딩에머슨자산운용주식회사라 한다. 영문으로는 LeadingEmerson Asset Management Co., Ltd.라 표기한다.	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리딩자산운용주식회사 라한다. 영문으로는 <u>Leading Asset Management Co., Ltd.</u> 라 표기한다.
제 1 장 총칙	제4조(공고방법) 이 회사의 공고는 서 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 신문에 게재한다.	제 4 조(공고방법)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<u>인터넷홈페이지(www.leadingamc.co.kr)</u> 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<u>한국경제신문</u> 에 게재한다.
제 4 장 이사.이사회	제31조(이사의임기)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한다.	제31조(이사의임기) 이사의 임기는 3년 <u>이내</u> 로하 되 연임할 수 있다.
	제35조(집행임원) ①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.	제35조 <u>삭제</u>
	제37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.	제37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③항 <u>삭제</u>
	제42조(위원회)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 1. 경영위원회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	제42조(위원회)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 의 위원회를 <u>둘 수 있다</u> . 1. 경영위원회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	제43조(경영위원회)①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2인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정한다.	제43조(경영위원회)①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 <u>1인이상</u> 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<u>이사회에 서</u> 정한다.